한국공인중개사협회

(39346)경상북도 구미시 구미대로 226, 5층(광평동, 창평타워) /전화 054-461-0124 /FAX 054-461-0127 / 김윤석

문서번호 경상북도회-2682

시행일자 2026.08.31

수 신 지회장

참 조

선결			지시		
접수	일자시간	. . .	결재·공람		
	번호				
처리과					
담당과					

제 목 『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』 개정사항 안내의 건

1. 관련근거
   가. 국토교통부공고 제2026-729호(2026. 6. 2.) “「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」 입법예고”
   나. 제도개혁과-379(2026.06.08.) “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에 따른 의견제출 안내”
   다. 제도개혁과-686(2026.08.28.) “「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」 개정사항 안내의 건”

2. 위와 관련하여 「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」 제20조 및 별지 제20호 서식이 개정됨에 따라, 2026. 8. 28.부터 **주거용 오피스텔 중개보수를 상한요율 이내에서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서로 “협의”하여 결정하도록 명확히 하고, 새로운 「중개대상물 확인·설명서[Ⅰ](주거용 건축물)」가 시행**되었습니다.

3. 이에 주요 개정내용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, 지회장님께서는 회원들이 개정내용을 숙지하여 중개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적극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붙임 : 「공인중개사법」 시행규칙 중개대상물 확인·설명서 개정에 따른 안내문 1부. 끝.

한국공인중개사협회 경상북도회장